

소비자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의·환기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가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_ 김현준 대리(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주의·환기 표시빈도 높아 구매 시 선택 제한

식품 주의·환기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 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표시 사항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제한할 우려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91개(75.8%) 제품이 주의·환기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

(예시)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원재료란에 표시)	주의·환기 표시(별도 표시)
B1염산염, 비타민B2, 엽산, D-소비톨액(소비톨0.7%), 유당, 글리니틴, 계피분말 • 땅콩, 우유, 대두, 밀 함유 • 포장재질 : 폴리프로필렌 • 유통기한 : 측면표기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제품은 쇠고기, 닭고기, 토마토, 게, 새우,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 중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가 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 유통 중인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유방처리제품)·어린이음료 각 30종 총 120개 제품

어린이음료(30개 제품) 주의·환기 표시 현황

구분	복숭아	토마토	대두	우유	메밀	밀	땅콩	기타	계
표시제품 수(개)	26	26	23	22	19	19	14	65	214
표시빈도 (%)	86.7	86.7	76.7	73.3	63.3	63.3	46.7	-	-

주의·환기 표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이고

품질관리 소홀 부를 수 있어 폐지 검토 필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주의·환기 표시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별도로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의 원재료 이외에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사업자의 품질관리 소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업자 자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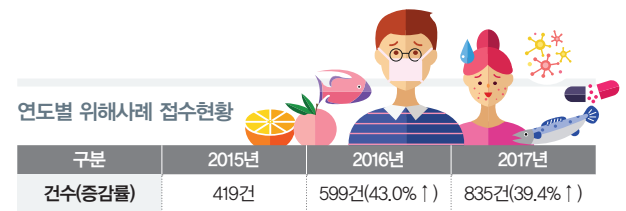
** '위해식품 회수 지침'에 따라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 대상에 해당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 2년간 2배 증가하고 영유아·어린이가 상당수 차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가 총 1,853건으로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건,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이외에 돌봄교사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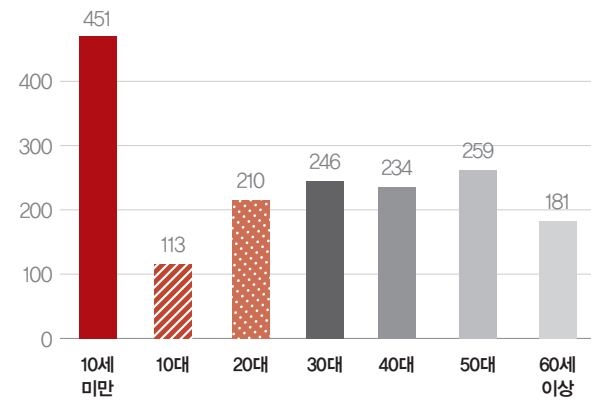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공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고 연령별 현황

[단위: 건]



*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94건 분석